

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(제38조제2항 관련)

|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|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| 수임 기관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국가기술표준원 |
| |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0호나목, 같은 조 제11호나목, 같은 조 제12호나목, 같은 조 제13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국가기술표준원 |
| |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국가기술표준원 |
| 환경부장관 |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측정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국립환경과학원 |
| 고용노동부장관 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|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| 국립전파연구원 |

비고: 수임기관에 위임되는 권한은 위 표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2항의 권한에 한정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.